

# 대법원 2021다241618 구상금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45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2. 3. 24.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일부)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sup>1)</sup>하였음(대법원 2021.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됨
- 따라서 손해 발생에 관하여 재해근로자 자신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에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손해액 중 지급받은 보험급여액과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
- 이와 달리 제3자(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에 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제3자(가해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거나, 손해 발생에 관하여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액 전액

을 공제해야 한다(=“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고,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일부)함

※ 공제후 상계설과 과실상계후 공제설 적용의 결과 차이에 관한 예시

- 과실이 30%인 재해근로자가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1,000만 원의 일실손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일실손해 관련 급여)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서,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가정함
- 과실상계후 공제설(종래 판례)의 적용시
  -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0원[(1,000만 원 × 70%) - 800만 원]
  - ▶공단의 구상권의 범위: 700만 원(손해배상채권액 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 유족급여액 전액)
- 공제후 과실상계설의 적용시
  -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140만 원[(1,000만 원 - 800만 원) × 70%]
  - ▶공단의 구상권의 범위: 560만 원(손해배상채권액 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 유족급여액 800만 원 × 70%)

## 1. 사안의 개요

- 피고 (주)○○전기(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로부터 둔내-무이2 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전송선로 지장이설 공사(이하 ‘이 사건 전송선로 이설공사’) 중 배전 공사(☞ 전주의 이설과정에서 전력선을 제거하고 전주 자체를 철거하는 공정)를 도급받아 공사함
- 통신사업자인 ○○텔레콤(주)로부터, 이 사건 전송선로 이설공사 중 광케이블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주) ○○통신(이하 ‘○○통신’) 소속 근로자인 망한○○(이하 ‘재해근로자’)은 갑자기 쓰러진 전주(본주를 지지하는 전주)에

1) 주문 : 파기환송 + 나머지 상고기각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소극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우측 머리부분을 가격당하여, 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음(이하 '이 사건 사고')

- 원고(공단)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근로자의 유족에게 **요양급여 7,065,250원, 장의비 14,531,690원, 일시금으로 유족연금 199,895,332원을 지급하였음**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액 상당을 구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발생하였는데,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하고, 그중 재해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가입자인 ○○통신의 과실 30%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먼저 재해근로자의 과실을 상계하여 가해자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다음, 그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 전액'에서, 손해액 중 사업주인 ○○통신의 과실 3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판단함 →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의함

## 2. 소송 경과 : 1심, 2심 '원고 일부 승'

- 제1심(서울중앙지법) : 원고 일부 승
  - 피고들의 책임비율 70%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인 ○○통신의 과실비율 : 1심은 참작하지 아니함
  - 인용 금액: 1심 208,341,007원
- 원심(서울고등법원) : 원고 일부 승
  - 피고들의 책임비율 85%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인 ○○통신의 과실비율 :

### 피고들의 책임 중 30% 인정함

- 인용 금액: 1심 97,585,525원
- 인용금액 산정방식: 재해근로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에 의함

## 3. 상고심의 주요 쟁점 : 전원합의 쟁점

- 공단(원고)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산재보험법도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건강보험공단 전합판결)의 취지와 같이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가 ‘보험급여 전액’이 아닌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부분 상당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 4. 쟁점의 이해를 위한 배경지식

### ■ 산재보험법

####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강보험법’)

#### 제58조(구상권)

-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재해근로자(= 유족 등 수급권자도 포함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제3자'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급여액 상당 금액을 구상함
  - ☞ ① 재해근로자는 가해자가 '제3자' 이든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이든지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가입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이 아님
  - ☞ ② But 공단은 가해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인 경우에는, 재해근로자의 가입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못함: ← 가입 사업주는 면책됨 ☞ 이 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과 다름(∵ 국민건강보험은 '가입 사업주' 개념이 없음)
- 종래 대법원은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급여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봄
-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 전합판결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종래의 판례를 변경함
- 이 사건의 쟁점은,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즉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대위의 범위를 제한할 것인지 문제됨

## 5. 대법원의 판단 : 전원일치 의견

## 가. 법리의 선언

- (1)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보험급여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 따라서 보험급여액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액 지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
- (2)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음.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sup>2)</sup>은 여전히 타당함.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음
-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

2)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않음

- 공단의 보험급여에 의하여 소멸하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나 공단의 보험급여 한도에서 공단이 대위하거나 향후 부담을 면하는 금액을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할 것인지는 법원이 위 각 규정과 산재보험법의 다른 규정들의 내용 및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 산재보험제도의 법적 성격과 기능,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나 형평의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산재보험법의 연혁, 입법 목적 및 산재보험제도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손해가 전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처음에는 주로 '과실책임주의'를 기초로 하여 사법상의 손해배상의 방법에 의해 해결되었음. 현대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산업재해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와 충분한 보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점차 '무과실책임이론'을 중심으로 한 직접보상제의 형식을 거쳐 사회보험제도를 통하여 재해근로자를 보상하는 방법으로 변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을 1963. 11. 5. 법률 제1438호로 제정하였음
- 산재보험은 제정 당시에는 책임보험적 성격이 강하였지만, 이후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고도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왔고, 판례도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등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왔음

-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재해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산재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서 민법상 손해배상과 같다고 볼 수 없음
  - 재해근로자는 자신의 100% 과실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1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공단으로부터 70만 원을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재해근로자는 70만 원 전액에 대하여 보험급여 이익을 누림. 그런데 만약 산업재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와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하여, 공단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재해근로자를 위해 본래 공단이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재해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됨. 이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의 촉진을 위한다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주와 공단을 동일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재보험제도의 복합적인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한다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여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주가 산재보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험에 노출시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과 산업재해 현장의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전적으로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범위에 관하여 종래의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변경하였음.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은 그 문구 및 형



식이 유사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산재보험법이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재해근로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보험급여를 하도록 하는 취지는 보험급여사유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책임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산재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한다면 산재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의 관점에 치중하였던 종래의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에 관하여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선언된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을 따르는 것이 법질서 내에서 통일된 해석임

#### 나. 판례의 변경 : 위와 다른 취지의 종래 판례를 모두 변경함

-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공단이 '보험급여 전액'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들을 모두 변경함
- 산업재해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여기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은 '보험급여 전액'에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들을 모두 변경함(다만, 이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판시 부분은 여전히 타당하므로, 변경대상이 아님)
- 같은 취지에서, 수급권자가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 또는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공단의 보험급여 의무

가 면제되는 한도에 관하여,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이 제외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보험급여 전액'이라는 취지 판결들을 모두 변경함

#### 다. 이 사건의 결론 : 파기환송(일부)

- 원고(공단)의 재해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를 산정하면서 소극적 손해와 관련하여 유족연금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유족연금 전액'에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인 ○○통신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을 구상(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소극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파기),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환송).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함

### 6. 판결의 의의

- 종래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공단의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는, '보험급여 전액'이고, 재해근로자가 가해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직접청구를 할 경우에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합 판결을 통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문언 해석, 산재보험법의 연혁, 입법 목적 및 산재보험제도의 사회보험적인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손해가 전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①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② 공단의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 금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제한됨
- 대법원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함으로써, ① 산재보험법의 존재 의의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해근로자의 손해보전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② 현대 산업현장의 높아지는 위험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대처하는 부분을 넓혀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도 더욱 기여하게 되었다는 데에 이번 판례의 의의가 있음